

수협은행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

제 1 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참가은행인 수협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과 참가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조회, 이체 등)를 표준화된 API 형태로 운영·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② “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한 핀테크 사업자와 은행 및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 ③ “참가은행”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이하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을 말합니다.
- ④ “금융정보조회”란 사용자가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제 5 조에 명시하는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조회 요청을 한 경우 은행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⑤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은행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결제원이 담당합니다.

제 3 조 (금융정보조회 신청)

-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금융정보조회 신청을 합니다. 신청 정보는 해당 은행으로 전달됩니다.
- ② 사용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정보조회 동의방법으로 금융정보조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③ 오픈뱅킹중계센터는 사용자의 금융정보조회 신청시 사용자가 신청한 실계좌번호를 가상의 계좌번호(이하 “핀테크이용번호”라 한다)로 변경하여 이용기관에 제공합니다. 단 자체인증 이용기관(은행 및 대형사업자 등)인 경우에는 실계좌번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④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보호받고 관리하기 위해 금융정보조회 신청을 1년 단위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 ⑤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4 조 (금융정보조회 이용시간)

금융정보조회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 10분부터 23시 50분까지로 합니다.

제 5 조 (금융정보 종류)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잔액조회 : 사용자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실시간 잔액 조회
- ② 거래내역조회 : 사용자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실시간 거래내역(거래일시, 거래점명, 거래금액, 거래 후 잔액, 통장인자내용) 조회

제 6 조 (금융정보제공 및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

- ① 사용자가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은행으로 금융정보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별도의 통지 없이 사용자의 금융정보 내역을 오픈뱅킹중계센터로 통지하며, 오픈뱅킹중계센터는 실계좌번호를 핀테크이용번호로 변경하여 이용기관으로 통지합니다. 단, 자체인증 이용기관(은행 및 대형사업자 등) 인 경우에는 핀테크이용번호 변경없이 실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은행은 사용자가 오픈뱅킹중계센터에 등록된 연락처로 사용자에게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사용자는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오픈뱅킹중계센터에 등록된 연락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④ 은행은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1년 이내 단위로 통보 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금융정보조회 중단)

- ① 은행은 오픈뱅킹공동업무 관련 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하는 경우 은행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이를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금융정보조회 해지)

- ① 사용자는 금융정보조회 해지를 오픈뱅킹중계센터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관련 법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조회요청이 없는 경우

제 9 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10 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금융정보조회와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1 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 12 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금융정보조회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9.10.24.)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10.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기존 약관의 적용)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오픈뱅킹공동업무가 전체 이용기관으로 확대시행 전까지 기존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금융정보조회 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며, 확대시행일은 오픈뱅킹중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수협은행 「오픈뱅킹공동업무」 자동계좌이체 약관

제 1 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수협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과 참가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조회, 이체 등)를 표준화된 오픈 API 형태로 운영·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② “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한 핀테크사업자와 은행을 말합니다.
- ③ “참가은행”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을 말합니다.
- ④ “자동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오픈뱅킹공동업무를 통하여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이용기관의 계정(이하 “계정”)으로 입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⑤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은행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담당합니다.
- ⑥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 3 조 (자동이체 신청)

-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는 해당 은행으로 전달됩니다.
- ② 사용자는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라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4 조 (자동이체 이용시간)

자동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 10분부터 23시 50분까지로 합니다.

제 5 조 (자동이체)

- ① 이용기관이 은행에게 특정 일자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 ② 제 1 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출금한도)

- ①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단,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 ② 사용자의 자동이체 출금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 사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제 7 조 (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자동이체 개시일은 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 8 조 (신청서 제출기한)

자동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신청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추심이체 출금동의로,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 9 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제 6 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은행은 자동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

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자동이체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자동이체 통합관리)

-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은행 채널(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타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해지 후 변경 하여야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제 13 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14 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자동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5 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 16 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자동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③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의 자동이체약관을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8.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6.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10.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기존 약관의 적용)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오픈뱅킹공동 업무가 전체 이용기관으로 확대시행 전까지 기존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자동계좌이체 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며, 확대시행일은 오픈뱅킹중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수협중앙회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

제 1 조(목적)

이 약관은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합니다)과 참가기관인「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이하 “수협”이라 합니다) 사이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한 금융정보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 ① “오픈뱅킹 서비스”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사용자가 이용기관을 통하여 참가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참가기관이 이용기관에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기관이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사용자에게 조회하여 주거나 해당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②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개별 참가기관과 별도 제휴 없이도,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기관의 금융정보 조회, 이체 등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 API 형태로 운영하고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③ “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오픈뱅킹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④ “참가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금융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으로서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금융기관 등을 말합니다.
- ⑤ “금융정보조회”란 사용자가 이용기관의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의 금융정보조회를 요청한 경우 이용기관이 오픈뱅킹중계센터를 통하여 참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사용자에게 조회하여 주는 업무를 말합니다.
- ⑥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참가기관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기 위하여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곳을 말합니다.

제 3 조(금융정보조회 신청)

- ① 사용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을 통하여 금융정보조회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은 해당 참가기관으로 전달됩니다.
- ② 사용자는 제 1 항에 따라 금융정보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참가기관이 보유하는 금융정보가 이용기관에 제공될 수 있도록 계좌단위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서면(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ARS 녹취 등에 의한 방법으로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 ③ 사용자가 제 1 항에 따라 금융정보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오픈뱅킹중계센터는 사용자가 조회를 신청한 실제 계좌번호를 가상의 계좌번호로 변경하여 이용기관에 제공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이 은행이거나 일정한 규모의 대형 사업자 등 자체인증이 가능한 이용기관일 경우에는 실제 계좌번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제 1 항에 따른 사용자의 금융정보조회 신청 및 제 2 항에 따른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신청 및 동의한 날로부터 1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속하여 오픈뱅킹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년 단위로 다시 신청 및 동의하여야 합니다.

⑤ 수협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수협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수협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4 조(금융정보조회 이용시간)

금융정보조회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 10분부터 23시 50분까지로 합니다.

제 5 조(금융정보 종류)

사용자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하여 수협으로부터 제공받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금융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잔액조회 : 사용자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한 실시간 잔액 조회
2. 거래내역조회 : 사용자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한 거래일시, 거래점명, 거래금액, 거래 후 잔액, 통장인자내용 등 실시간 거래내역 조회

제 6 조(금융정보제공 및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

① 사용자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참가기관으로 금융정보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 수협은 별도의 통지 없이 사용자의 금융정보 내역을 오픈뱅킹중계센터로 통지하며, 오픈뱅킹중계센터는 실제 계좌번호를 가상의 계좌번호로 변경하여 이용기관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이 은행이거나 일정한 규모의 대형 사업자인 경우 등 자체인증이 가능한 이용기관일 경우에는 실제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수협은 금융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오픈뱅킹중계센터에 등록된 연락처로 사용자에게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오픈뱅킹중계센터에 등록된 연락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 수협은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사용자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금융정보 제공사실에 대한 일괄통보 동의를 받은 경우,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1년 이내 단위로 일괄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금융정보조회 중단)

수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오픈뱅킹공동업무 관련 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수협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8 조(금융정보조회 해지)

- ① 사용자는 금융정보조회 해지를 오픈뱅킹중계센터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수협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거나 관련 법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조회요청이 없는 경우
- ③ 사용자가 제 2항에 따른 수협의 금융정보조회 해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면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 10 조(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금융정보조회와 관련하여 수협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1 조(약관의 변경)

수협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변경 절차를 정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 12 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 ① 금융정보조회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 부 칙 >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수협중앙회 「오픈뱅킹공동업무」 자동계좌이체 약관

제 1 조(목적)

이 약관은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합니다)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참가기관인「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이하 “수협”이라 합니다) 사이에서 출금이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 ① “오픈뱅킹 서비스”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사용자가 이용기관을 통하여 참가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참가기관이 이용기관에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기관이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사용자에게 조회하여 주거나 해당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개별 참가기관과 별도 제휴 없이도,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기관의 금융정보 조회, 이체 등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 API 형태로 운영하고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③ “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오픈뱅킹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④ “참가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금융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으로서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금융기관 등을 말합니다.
- ⑤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오픈뱅킹공동업무를 통하여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이용기관의 계정으로 입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⑥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참가기관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기 위하여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곳을 말합니다.
- ⑦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 3 조(출금이체 신청)

-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오픈뱅킹 서비스에서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는 해당 참가기관으로 전달됩니다.
- ② 사용자는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 15 조제 1 항에 따라 서면(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이용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수협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수협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수협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4 조(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 10분부터 23시 50분까지로 합니다.

제 5 조(출금이체)

- ① 이용기관이 수협에게 특정 일자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수협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 ② 제 1항의 경우 금융기관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협은 예금청구서 또는 그 밖의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출금한도)

- ①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수협에 개설된 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를 포함합니다)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 ② 사용자의 출금이체 출금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 사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제 7 조(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수협이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 8 조(신청서 제출기한 등)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을 포함합니다)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 9 조(출금기준 및 이익제기)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참가기관의 제 6 조에서 정한 출금한도 범위내에서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수협은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수협의 출금이체 해지)

수협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자동이체 통합관리)

-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 ② 수협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참가기관의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다른 참가기관의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등록된 출금계좌에 대한 출금이체 신청은 해지한 것으로 보며 변경 후 출금계좌에 대한 출금이체 신청을 신규로 한 것으로 처리하여 등록합니다.

제 13 조(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면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 14 조(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수협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5 조(약관의 변경)

수협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변경 절차를 정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 16 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 ①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이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 ③ 제 1항 및 제 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수협의 출금이체 관련 약관을 따릅니다.

< 부 칙 >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